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145 발의연월일: 2020. 7. 17.

발 의 자:추경호·강기윤·이종배

김희국 · 정운천 · 박덕흠

이채익 · 이명수 · 정진석

金炳旭・권성동・김석기

주호영 · 유희숙 · 이 영

의원(15인)

제안이유

2020년 1분기 우리 경제성장률이 전기대비 -1.4%를 기록하면서 금융위기를 겪었던 2008년 4분기(-3.3%) 이후 최악을 기록했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그리고 기업규제를 강화하는 등의 반기업적 경제정책이 코로나 경제충격과 맞물리면서 내수·고용·수출 등 실물경제의 어려움이 확산되고 있으며 경제심리가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음. 실제로 3월 소비자심리지수는 78.4로 전월대비 18.5p 하락했고, 기업경기실사지수는 54로 전월대비 11p 하락하면서 두 지표모두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인 2009년 3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1분기 국내 설비투자 또한 전기대비 3.5% 감소하면서 본격적인 경기침체가 시작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음.

더구나, 대부분의 국가가 법인세율 인하를 통해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던 시기에 문재인 정부는 세계 추세에 역행하면서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3%p 인상했음.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2009년부터 미국 등 21개국이 법인세율을 인하했고 특히 OECD국가 중 법인세율이 가장 높았던 미국은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일본은 30%에서 최근 23.2%까지 낮췄으며 프랑스도 34.4%에 달했던법인세율을 2022년까지 25%로 낮춘다는 계획임.

그 결과, 대한민국은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처로서의 매력을 점점 잃어가고 있음. 2017년 447억 달러였던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액(실제투자기준)은 2019년 618억 달러로 2년 새 38.3% 증가했으나,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액(도착기준)은 2018년 173억 달러에서 지난해131억 달러로, 24.2% 감소했음. 특히 경제성장률에서 민간이 기여한비율이 2017년 78.1%에서 2019년 25.0%로 53.1%p 급전직하 하면서기업투자 등 민간경제 활력이 빠르게 떨어지고 있음.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는 법인세율 인상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과표구간을 4개로 늘렸는데, 이 또한 세계적인 추세를 거스르고 있는 것임. OECD 소속 36개국 중 88.9%가 넘는 32개국이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만 과표구간을 4개로 구분하고 있음. 우리나라와같이 과표구간을 늘리고 세율을 누진적으로 적용할 경우 조세형평성이 왜곡되는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대부분의 주요 선진국들이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임.

또한 국제통화기금(IMF)도 정부와의 연례협의 결과보고서를 통해, 한국 정부가 법인세 세율을 단일화하는 등의 방식으로 왜곡을 없애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음.

이에 현행 4개인 과표구간을 2개로 단순화하고 중소·중견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의 법인세율을 인하함으로써,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 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여 경제활력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현행 4개인 과세표준 구간을 2억원 이하와 2억원 초과의 2개 구간으로 축소하고, 과표 2억원 이하 구간에 대해서는 8%의 세율을, 2억원 초과 구간에 대해서는 2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함(안 제55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1년도 세입예산 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법률 제 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8			
2억원 초과	1천6백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7	H 정	안	
제55조(세율	k) ① 내국법인의 각	제55조(세율) ①			
사업연도	의 소득에 대한 법인				
세는 제1	3조에 따른 과세표준				
에 다음	표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급	금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역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				
세액과 >	제56조에 따른 미환류				
소득에 다	대한 법인세액이 있으				
면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_	과세표준		세율	
<u>2억원 이하</u>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u> 2억원 이하</u>	과세표준	의 100분의 8	
<u>2억원 초과</u>	<u> 2천만원 + (2억원을</u>		1천6백만	원 + (2억원을	
<u>200억원</u>	<u>초과하는 금액의</u>	2억원 초과	<u>초</u> 과형	하는 금액의	
<u>이하</u>	<u>100분의 20)</u>		100	분의 20)	
200억원	39억8천만원 +				
<u> </u>	(200억원을 초과하는				
<u> 3천억원</u>	금액의 100분의 22)				
<u>이하</u>					
<u>3천억원</u> <u>초과</u>	655억8천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u>금액의 100분의 25)</u>				
② (생 략)		② (현행	② (현행과 같음)		